

수원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4284 판결 [공사대금 반환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42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120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김혜륜, 송유진, 오엘림, 추연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훈희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2022. 4. 22.

판결 선고2022. 6. 1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120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356,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증인 H(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은'

『제1심 증인 H(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무신

판사심연수

판사유현종